

2015년 파리 신기후체제 합의에서의 자원부문 논의와 시사점

- 문진영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 이성희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shlee@kiep.go.kr, Tel: 044-414-1234)

차 례 ●●●

1. 배경
2. 기후자원 쟁점 및 논의사항
3. 기후자원 관련 주요 합의사항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 2015년 12월 12일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는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감축에 동참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하였음.
 -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수단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 기후재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활동을 지원하면서 합의의 이행수단인 능력배양과 기술개발 및 이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금번 합의에서도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음.
 - 2012년 본격적인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기후재원의 공여 주체, 자원조성의 확대 및 출처, 재원의 활용 및 보고, 기존 협약 내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 2020년 이전의 자원조성 방안, 지원과 행동의 투명성 등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음.
- ▶ 협정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주도적인 기후자원 조성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선진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도 자발적인 기후자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음.
 - 선진국은 대신 2025년 이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자원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여 기존 2020년까지의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약속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음.
- ▶ 우리나라와 같은 기여가능국가는 금번 협정을 통해 기후자원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자원 조성에 나름의 역할 수행이 여전히 필요함.
 -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기후자원 조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기후자원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될 기후재원의 상당 부문이 GCF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1. 배경

■ 2015년 12월 12일 UN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음.

- 2011년 더반 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하는 의정서(protocol)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 결과를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는 2012년부터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 회의(ADP)¹⁾’를 통해 신기후체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음.
- 금번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수단과 투명성이 강조된 것으로,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합의 도출로 평가할 수 있음.

■ 기후재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활동을 지원하면서, 합의의 이행수단인 기술개발 및 이전과 능력배양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금번 합의에서도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의견 대립을 보임.

-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 21차 당사국총회는 첫 주에 개최된 ADP 2-12에서 도출된 협정문 초안이 당사국총회로 넘어오면서, 21차 당사국총회 의장(President)²⁾은 ‘파리 위원회(Comité de Paris)’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신설하여 각 쟁점 의제별로 논의를 진행함.
- 각료급 주도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논의된 쟁점은 1) 지원: 이행수단(재원, 기술, 능력배양) 2) 차별화(감축, 재원, 투명성) 3) 장기 목표 및 주기적 검토를 포함한 의욕(ambition) 4) 2020년 이전 행동 강화, 5) 적응과 손실 및 피해 6) 전문(preamble) 7) 산림 8) 협력 접근 및 메커니즘 9) 대응 조치 10) 이행과 합의 촉진 등으로 구분됨.
- 기후재원과 관련된 쟁점은 1)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원 지원방안 2) 차별화와 관련된 재원조성 주체와 관련된 사항 등이었으며, 협정 도출 막판까지 각 당사국의 입장이 대립될 만큼 첨예한 이슈였음.

■ 본 자료는 파리 합의 도출에 있어서 기후재원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이며, OECD 및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나름의 기여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1)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2)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외무장관.

2. 기후자원 쟁점 및 논의사항

■ 그동안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ADP 협상을 이어왔으며, 기후자원 관련 논의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문이 쟁점으로 다뤄짐. 선진국은 개도국의 여건개선과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의무를 강조하였음.

가. 기후자원 논의의 주요 쟁점

■ [기후자원 공여 주체] UN 기후변화협약에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한 이래,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강조되었으나, 모든 당사국의 책임이 강조되는 신기후체제에서 자원조성의 주체로서 모든 당사국, 선진국, 가능한 당사국 등 여러 주체가 제시되었음.

-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원조성 의무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 협약의 이분화된 주체 논의에서 벗어나, 기여 가능한 국가(in a position to do so)의 자원조성도 언급하면서 선진국의 자원조성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음.

■ [자원조성 확대 및 출처] 자원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사국간에 큰 이견이 없었으나, 자원조달의 중심이 될 자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상충되었으며, 개도국은 2020년 이후 선진국의 자원 지원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 지난 2010년 칸쿤 합의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자원조성을 공약하고, 공공 및 민간, 다자 및 양자, 대안적 출처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한 자원조성을 합의한 바 있음.

- 선진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자원조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개도국의 여건개선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개발계획과 개발원조, 국내외 투자와의 통합을 언급함.

- 개도국은 선진국의 새롭고, 추가적이며, 예측가능하고 접근가능한 자원조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 이후에도 연간 1,000억 달러를 기초로 한 투명한 로드맵하에서 자원확대를 강조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별개의 공공재원이 자원조성의 핵심임을 강조함.

■ [자원의 활용 및 사전적 정보 제공]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사업의 균형된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자원조성의 사전적 보고(ex-ante communication) 방법에 있어 개도국은 예측가능성 증대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주기적인 보고를 강조하였음.

- 개도국은 감축과 적응 간의 50:50 비율을 명기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수준(projected levels of

support)을 구체적으로(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포함)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음.

- 선진국은 특정 비율로 명기하기보다는 감축과 적응 간의 균형을 지향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개도국의 지원과 관련된 사전적 보고에 대해서는 선진국 외의 기여가능국도 참여하고, 주기적으로(periodically)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었음.

■ [기존 협약 내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 기존 협약 내 재정메커니즘과 관련된 운영 주체 및 기금이 금번 합의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에는 당사국 모두 공감하였으나, 협정문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할 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상반되었음.

- 협약 11조에 기술된 재정메커니즘이 새로운 합의에서도 재정메커니즘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데에는 당사국별로 이견이 없었으나, 개도국은 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금(LDCD, SCCF, AF)을 모두 합의문에 명시하여 기존의 모든 협약 내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재정메커니즘 이외의 여러 기금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 우리나라는 GCF를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의 핵심으로 강조하였고, 개도국은 교토의정하에 설립된 적응기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문에 이를 반영하고, 재정메커니즘의 또 다른 운영 주체로 적응기금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지원과 행동의 투명성] 당사국의 행동과 지원 이행 사항을 보고하는 투명성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선진국은 하나의 통합된 투명성 체계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현재의 보고 체계에 기초하자는 입장이었음.

- 선진국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a unified and robust) MRV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당사국총회의 합의(1/CP.16, 2/CP.17)의 대체(supercede)를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기존의 보고 체계에 기반한 모든 당사국의 보고를 주장.

■ [2020년 이전 재원] 지난 2010년 16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의미 있는 감축과 투명한 이행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음.

- 개도국은 재정메커니즘을 통한 개도국 지원이 미미함을 언급하면서, 기존 협약에 의무로 명시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원 지원에 따라 개도국의 협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기후재원 정의와 관련된 공통의 이해와 운영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정립과 투명한 재원조성 로드맵 수립을 강조하였음.
- 선진국은 기존에 약속한 1,000억 달러 재원조성 의무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최근의 OECD 결과^{*)}를 인용하며 선진국의 진전된 재원조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성 목표 설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 OECD 사무국이 CPI(Climate Policy Initiative)와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³⁾로 개도국을 위해 선진국이 조

3) OECD(2015), "Climate finance in 2013-14 and the USD 100 billion goal," a report by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성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은 2013년 522억 달러이며, 2014년은 61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추정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금번 파리 협상에서 분석결과가 자주 인용되었음.

나. 자원부문 파리 합의문 관련 논의

■ 선진국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선진국의 의무만 부과되어 모든 당사국의 역할이 누락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협정문에 구체적인 자원조성 수치에 대한 명시를 반대함.

- EU: 자원 제공 및 사전적 정보 보고 등 선진국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스위스: 기여가능국의 자원 지원도 의무사항(should)으로 표기하며, 2020년 이후의 자원조성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구체화한 수치 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 미국: 모든 당사국이 노력하지 않고 선진국이 자원 지원을 리드하게 된 것에 우려함.
- 캐나다: 협정문에 1,000억 달러 조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단기조성 목표 명시도 반대함.
- 노르웨이: 자원조성에 있어 모든 당사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단기 자원조성 목표 수치 나열도 부담스럽고 자원의 정보 제공이 선진국에 국한되는 것도 반대함.
- 일본: 모든 국가의 자원조성 참여를 권고해야 하며, 단기조성 목표도 곤란함.
- 호주: 저탄소 기후복원적 개발과 여건조성을 통한 자원조성이 필요하며, 협정문에 1,000억 달러 명기는 곤란함.

■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의 자원 지원이 남남협력 차원의 자발적이며 보완적인 측면임을 지적하면서, 예측 가능한 자원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자원 목표 설정을 선진국에게 요구함. 다만,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에 자신이 속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개도국간에도 의견이 상충됨.

- 볼리비아(G77): 선진국의 자원조성 주도가 중요하며, 별도 단락으로 선진국 이외 국가의 자발적 기여 기술이 필요하며, 선진국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자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콜롬비아: 단기 자원조성의 수량화 목표는 꼭 유지되어야 하며, 역량이 제약된 국가로 라틴아메리카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새롭고 추가적인 자원이 중요하며 선진국 외의 자원 지원 동참은 남남협력 차원임.
- 중국: 기후문제와 국제개발 지원과의 통합은 곤란함.
- 아르헨티나: 협정문에 자원의 성격(새롭고, 추가적이며, 예측가능하고, 접근가능하고 지속적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여러 자원의 출처에 있어서의 공공재원의 역할을 강조함.
- 인도네시아: 개도국의 자원 지원은 남남협력 차원이며, ODA와는 별도의 자원 지원을 요구함.

3. 기후자원 관련 주요 합의사항

가. 협정문 9조 주요 내용

- 협정문에서 자원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9조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자원조성의 주체(차별화), 자원조성 방안, 감축과 적응 간 균형, MRV 및 보고, 재정메커니즘 등이 포함되었음.
- [차별화: 단락 1] 선진국은 기존 협약에서의 의무를 지속하면서 감축 및 적응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함(shall).
 - 개도국이 문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조성될 자원’의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새롭고, 추가적이며,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접근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단순히 선진국이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됨.
- [차별화: 단락 2] 다른 당사국도 자원 지원에 나서거나 이러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지속하도록 독려함(encouraged).
 - 기존 논의에서 선진국의 자원 지원 사항과 함께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함.
- [자원조성: 단락 3] 글로벌 노력 차원에서 선진국은 공공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면서 다양한 출처, 수단, 채널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원조성을 주도함. 이는 국가주도 전략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후재원의 조성은 이전 노력 이상의 진전을 의미해야 함.
 - 기존 논의에서 포함되었던 ‘우호적 환경’ 문구가 제외되는 대신에, 자원의 확대(scaling up)에 있었던 ‘이전 노력 이상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개도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1,000억 달러 이상을 기초로 2020년 이후의 단기적이고 수량화된 자원조성 목표 설정은 협정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협정문에 구체화된 자원조성 규모 명시가 곤란하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되었음.
- [감축 및 적응간 균형: 단락 4] 확대된 자원의 제공은 감축 및 적응 간의 균형(balance) 달성을 지향(aim)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특별히 취약하고 역량이 제한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의 수요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며 공공 및 양허성 재원을 고려함.
 - 개도국간의 상이한 이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최종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았음.

- [사전적 보고: 단락 5] 선진국은 가용하며 예측 가능한 수준의 공공재원을 포함하여 자원조성과 관련한 예시적인 정보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보고하며, 다른 당사국도 이러한 정보 보고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함.
 - 선진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진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도 이러한 보고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개도국의 요구가 반영되어 격년도로 보고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이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절충되어 반영됨.
- [이행점검: 단락 6] 협정문 14조에 기술된 이행점검(stocktake)은 선진국 등이 기후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제공한 정보를 고려함.
- [MRV: 단락 7] 선진국은 공공 개입을 통해 제공되고 조성된 개도국 지원에 관해 투명하고 일관적인 정보를 격년도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modalities), 절차(procedures) 및 지침(guidelines)이 금번 합의의 첫 번째 당사국총회(CMA)⁴⁾에서 결정되며 다른 기여당사국도 이러한 정보 제공을 독려함.
 - 선진국이 자원정보 제공의 주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여당사국의 보고도 포함되었음.
- [재정메커니즘: 단락 8] 기존 협약의 재정메커니즘이 금번 합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도 재정메커니즘으로 기능함.
 - 기존 협약 내 관련 기구나 기금 등을 구체화하여 기술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존 협약하의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만이 강조되었음.
- [자원접근: 단락 9] 재정메커니즘을 포함하여 파리합의를 수행하는 기구는 단순화된 승인절차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접근을 목표로 함.

나. 자원 관련 결정문

- 파리협정을 뒷받침하는 결정문 3장 자원(단락 53~65) 및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4장 2020년 이전의 행동 증대에 자원 관련 결정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4)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 [단락 53] 개도국에 지원된 자원은 합의 이행을 위한 감축과 적응 측면에서 개도국의 정책, 전략, 규제 및 행동 계획을 개선해야 함.

- [재원조성: 단락 54] 선진국은 의미 있는 감축과 투명한 이행 측면에서 2025년까지 기존 재원조성 목표를 유지하며, 당사국총회(CMA)는 2025년 이전까지 금번 합의된 개도국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량화된 목표(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설정해야 함.
 - 선진국이 협정문 단락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조성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결정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선진국은 기존 2020년까지의 1,000억 달러 조성 약속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 [산림지원: 단락 55]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REDD-plus)’ 활동 이행을 위해 result-based payment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재원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공과 민간, GCF를 포함한 다자 및 대안적 수단을 통한 지원을 유도함.

- [정보소통: 단락 56] COP22에서 사전적 정보와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제공될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시하여 첫 번째 CMA에서 채택할 권고사항을 제시함.

- [MRV: 단락 57, 58] 협정문 9조 단락 7의 정보 제공은 협정문 13조의 투명성에 근거하여 첫 번째 CMA에서 채택할 행동과 지원을 위한 공통의 방식, 절차 및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며, SBSTA가 공공 개입을 통해 제공되고 조성된 재원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 체계를 고안하여 2018년 24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고, 첫 번째 CMA에서 채택되도록 함.
 - 두 단락 모두 기존 논의에서 검토되지 않다가 최종 문안에 새로이 반영되어, 협정문 9조 단락 7의 MRV를 위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재정메커니즘: 단락 59~63] 재정메커니즘의 운영 주체인 GCF와 GEF, 그리고 협약하의 특별기후변화기금과 최빈개도국기금은 금번 합의를 지원하며(단락 59),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와 CMA의 결정에 따라 적응기금도 금번 합의를 지원함(단락 60).
 - 협정문 단락 8에 나열되지 않은 협약 내 기금과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를 모두 결정문에 나열하였으며, 개도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추후 적응기금도 금번 협정하의 기금으로 수행할 근거를 확보함.
 -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 결정을 통해 적응기금도 금번 협정하의 기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P가 이와 관련한 권고안을 첫 번째 CMA에 제시하도록 요청되었음(단락 61).

- CMA가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의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타당성 기준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함(단락 62).
- 금번 합의 채택 이전에 당사국총회에서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에 제공된 지침이 여전히 적용됨(단락 63).

■ [상설위원회: 단락 64] 상설위원회는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기능과 책임대로 금번 합의를 지원함.

■ [재원접근: 단락 65] 금번 합의를 수행하는 기구는 재원 전달과 조정을 증진하기 위해 단순화된 효율적인 신청 및 승인 절차, 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국가주도 전략을 지원함.

■ [2020년 이전의 행동 증대: 단락 115] 당사국의 2020년 이전의 의욕적인 행동 증진을 위해 시급하고 적절한 재원 제공,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재원조성 로드맵을 통해 선진국의 재원조성 확대를 촉구하고, 현 수준보다 상당히 증가한 적응재원과 적절한 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 기후재원 조성의 주체로 선진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여가능국가는 자발적이고 보완적 측면에서의 재원조성으로 합의되면서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나,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나름의 역할 수행이 여전히 필요함.

-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 국가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기후재원 조성과 관련된 논의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될 기후재원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과 개도국은 재원조성 규모의 명시를 두고 대립하였으나, 기후재원의 명확한 정의나 일관된 지원의 MRV 체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수치상의 기후재원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기후재원의 정의 부재와 현행 보고 체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후재원의 집계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남.
 - 금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최근의 OECD 보고서(각주3)를 인용하며 기후재원 조성에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이러한 보고서에서 사용된 정보로는 완전한 기후재원 조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후재원으로 포함된 일부 항목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따라서 향후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호 비교 가능하고 이중계산을 배제하는 투명한 MRV 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후재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우리나라는 GCF의 향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운영메커니즘 운영 주체로서의 GCF와 GEF, 그리고 협약내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과 보완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상설위원회에서 재정메커니즘 전반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향후 재정메커니즘에서 GCF가 갖게 될 위상정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임.
- 지난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적응 부문을 위한 다자 기금의 상당 비중(significant share)이 GCF를 통해 지원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금번 협정문에는 GCF나 GEF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협약 내 재정메커니즘의 운영 주체가 금번 합의에서도 운영 주체로 기능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논의는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재정메커니즘 운영 주체의 지침이나 기존 협약 내 기구간의 연계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상설위원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최근 논의가 시작된 GCF와 교토의정서하에서 설립된 적응기금간의 향후 연계(linkage) 및 관계 설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은 그간 ADP 협상에서 적응기금을 GCF, GEF에 이은 또 다른 재정메커니즘의 운영 주체로 추가하려는 입장을 제기하였고, 협정문에 협약 및 교토의정서하의 세 가지 기금(적응기금, 최빈개도국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응기금의 명맥 유지에 주력함.
- 2014년 10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10)는 적응기금이사회(AFB)로 하여금 적응기금과 협약 내 다른 기구와의 운영적 연계를 고려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⁵⁾ 2015년 상설위원회는 최근 적응기금과 협약내 기구 간의 관계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여러 논의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향후 연계 및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examin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COP21에서 상설위원회로 하여금 관련된 작업을 계속하기를 권고하였음.⁶⁾
- 따라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GCF는 적응기금과의 구체적인 업무 연계 또는 2017년 6월까지 적응기금의 임시 수탁자(interim trustee)로 지정된 세계은행을 대신하여 적응기금의 수탁자로 지정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음. KIEP

5) Decision 2/CMP.10, para. 6.

6) UNFCCC(2015),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nex IX. Future institutional linkages and relations between the Adaptation Fund and other institutions under the Convention.